

#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
----------	----

제출년월일 : 1999. 10. 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이유

-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치명령 절차 등의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 별표1에 환경부 예규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어, 환경부 예규가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제12조)
- 나.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함.(안 제14조)
- 다. 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14조2, 제17조)

## 3. 관계법령

- 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나.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1항의 내용 “구청장은 법제40조 및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게 별표1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를 “과태료부과기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로 하고, 동조제1항의 1호내지 2호 및 동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태료부과징수절차등) ①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 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하다고 확인 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⑤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구세부과징수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를 삭제한다.

[별지제1호서식]내지[별지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조치명령 절차 등) ①법 제15조 제5항 및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사 등” 이라 한다) 또는 사업자, 일반폐기물배출자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행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p> <p>②제조사 등 또는 사업자, 일반폐기물배출자는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행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p>	(삭제)
<p>제12조(보고 및 검사)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1의 해당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p>	(삭제)

현행	개정안
<p>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p> <p>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배출자</p> <p>②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p> <p>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구청장은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1에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p> <p>2.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p> <p>②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lt;신설&gt;</p>	<p>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14조의2(과태료부과징수절차등) ①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p>

현행	개정안
<p>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부과·징수등 관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p>	<p>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하다고 확인 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자에 게도 통지하여야 한다.</p> <p>⑤기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구세부과징수규칙제2조를 준용한다.</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1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p>	<p>(삭제)</p>
<p>&lt;신설&gt;</p>	<p>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별표1](삭제)</p>	<p>(삭제)</p>
<p>[별지 제1호서식]내지[별지제2호서식](삭제)</p>	<p>(삭제)</p>